

대법원 2017. 2. 15 선고 2016다4778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7. 2. 15 선고 2016다47782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6. 10. 13 자 2016재나79 결정

전 문
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A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7. 2. 15.

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재나7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보영

대법관박병대

대법관권순일

주심대법관김재형